

2018년 08월

# 농식품 통관거부 및 식품안전사례 동향분석

- I.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 5. (부록)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사례(4~6월)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 III.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 1.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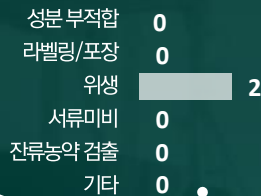
### 미국

한국산 **14**건  
(‘18.8월 118건/ ‘17년 2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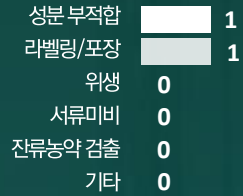
### 일본

한국산 **2**건  
(‘18.8월 16건/ ‘17년 19건)



### EU

한국산 **2**건  
(‘18.8월 3건/ ‘17년 10건)



### 대만

한국산 **0**건  
(‘18.8월 11건/ ‘17년 37건)

### 호주

한국산 **0**건  
(‘18.8월 3건/ ‘17년 6건)

### 러시아

한국산 **0**건  
(‘18.8월 0건/ ‘17년 1건)

##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제품별 현황

### 과자류 / 총 6건



미국 6건

### 기타조제농산품 / 총 2건



미국 2건

### 수산부산물 / 총 2건



미국 2건

### 포유가축육류 / 총 1건



일본 1건

### 면류 / 총 1건



EU 1건

중국, 캐나다의 경우, 2018년 8월 통관거부 사례가 홈페이지에 미계재되어 확인이 불가능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 미국 8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14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미국	8월	비스킷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식품 통칭 및 관용명 미표기	-
미국	8월	비스킷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필수 라벨 정보 영어로 미표기	-
미국	8월	기타베이커리 제품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
미국	8월	아침식사 대용 제품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성분부적합	독성물질 검출	-
미국	8월	구운 스낵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식품 통칭 및 관용명 미표기	-
미국	8월	구운 스낵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식품 통칭 및 관용명 미표기	-
미국	8월	조기	수산물	어류	기타	식품 부패	-
미국	8월	해삼	수산물	수생동물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표기	-
미국	8월	생선 연어알, 어패류	수산물	수산부산물	성분부적합	리스테리아균 검출	-
미국	8월	생선 연어알, 어패류	수산물	수산부산물	성분부적합	리스테리아균 검출	-
미국	8월	청량 음료, 감귤류의 과일 향, 탄산	농산물	음료	라벨링	필수 라벨 정보 영어로 미표기	-
미국	8월	그래스 젤리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식품 통칭 및 관용명 미표기	-
미국	8월	인삼제제	농산물	인삼류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표기	-
미국	8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조제품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라벨링	수출업체 주소 및 연락처 미표기	-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 일본 8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2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일본	8월	새조개	수산물	연체동물	위생	세균 수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일본	8월	육회	축산물	포유가축육류	위생	세균 양성 반응	폐기 또는 반송

### EU 8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2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EU	8월	건조 미역	수산물	해조류	성분부적합	요오드 검출	기타
EU	8월	인스턴트 누들	농산물	면류	라벨링	우유 성분 미표기	-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 미국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라벨링

##### 한국 과자류 수출업체, 성분 통칭, 관용명 미표기하여 통관 거부

2018년 8월, 한국의 과자류 수출업체 4곳은 미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제품의 성분 통칭과 관용명을 표기하지 않아 통관 거부되었음. 품목 유형 및 정의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 관련 규정인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 IV: Food, Section 403(i)(1), (2)에 의거, (1) 라벨에 식품의 통칭 및 관용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정 표시 식품으로 간주하며, (2) 식품이 2개 이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 각 재료의 통칭 및 관용명을 표기해야 함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403(i)(1),(2)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 한국 비스킷 및 음료 수출업체, 필수 라벨 정보 영어로 미표기하여 통관 거부

2018년 8월, 한국의 비스킷 및 음료 수출업체 2곳은 미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라벨링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지 않아 통관 거부되었음. 21 CFR 101.15(C)에 따르면,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또한, 라벨링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인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 IV: Food, Section 403(f)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 방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 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미국, 21 CFR 101.15(C)

<https://www.gpo.gov/fdsys/pkg/CFR-2012-title21-vol2/pdf/CFR-2012-title21-vol2-sec101-15.pdf>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403(f)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EU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성분

## 한국 해조류 수출업체, 과량의 요오드가 검출되어 통관 거부

2018년 8월, 한국 해조류 수출업체는 EU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과량의 요오드가 검출(4.995, 4.387mg/kg)되어 통관이 거부되었음. 유럽집행위원회(EC)의 No 1881/2006은 식품에 함유된 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치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김, 미역, 다시마 등 건조 해조류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EU) 2018/464에 따르면, 해조류에 대한 요오드, 중금속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음. 성인 1일 요오드 섭취량은 600 $\mu$ g/day, 1~3세 영유아는 200 $\mu$ g/day으로 제한하고 있음

▷ (EU) 2018/46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18.078.01.0016.01.ENG#ntr1-L\\_2018078EN.01001601-E0001](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18.078.01.0016.01.ENG#ntr1-L_2018078EN.01001601-E0001)

## 한국 인스턴트 누들 수출업체,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기하여 통관 거부

2018년 8월, 한국의 인스턴트 누들 수출업체는 EU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라벨링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를 미표기하여 통관이 거부되었음. 유럽집행위원회(EC)의 DIRECTIVE 2000/13/EC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 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 표시, 9)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셀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 EC, DIRECTIVE 2000/13/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0L0013>

▷ EC, DIRECTIVE 2003/89/EC,  
<http://extwprlegs1.fao.org/docs/pdf/eur40285.pdf>

Food Import Refus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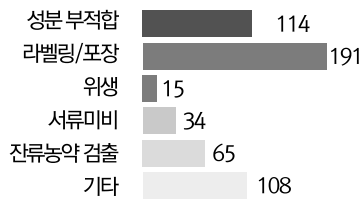
#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8월)



**미국**

총 52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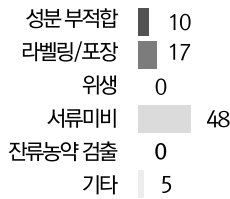
**EU**

총 17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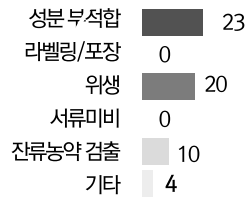
**러시아**

총 80건



**일본**

총 57건



**대만**

총 53건



**호주**

총 19건



Food Import Refusal by Canada

# 5. (부록)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4~6월)

##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 현황(4~6월)



**한국산**  
(‘18.6월 0건/ ‘17년 0건)

**4월 총 2건**

성분 부적합	0
라벨링/포장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2

**5월 총 10건**

성분 부적합	0
라벨링/포장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0

**6월 총 11건**

성분 부적합	0
라벨링/포장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1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에서 분기별로 통관거부 현황 발표

## 캐나다 4월 글로벌 통관거부 발생 사례(2건)

수출국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영국	우유 분말	축산물	낙농품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미국	소시지 케일 스프	축산물	기타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 캐나다 5월 글로벌 통관거부 발생 사례(10건)

수출국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미국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아스파라거스	농산물	채소류	기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미준수
미국	가금류(185g 초과/닭, 오리, 칠면조)	축산물	가금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네덜란드	돼지껍데기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불가리아	슬로우(sloes)	농산물	과실류	기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미준수

Food Import Refusal by Canada

# 5. (부록)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사례(4~6월)

수출국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미국	뼈있는 쇠고기(안심)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소시지 파스타 소스	농산물	소오스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뉴질랜드	배(신선)	농산물	과실류	기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미준수
미국	가금류(185g 초과/닭, 오리, 칠면조)	축산물	가금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 캐나다 6월 글로벌 통관거부 발생 사례(11건)

수출국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미국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미국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쇠고기(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기타)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닭가슴(냉동)	축산물	가금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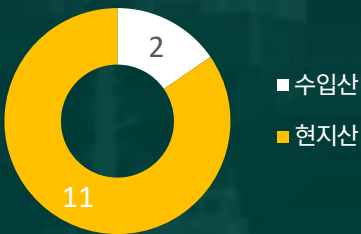
호주

한국산 0건 / 총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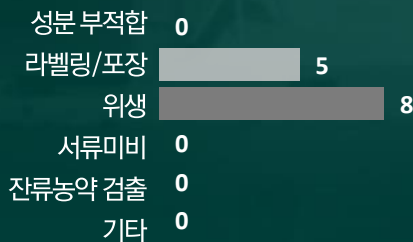
(‘18.8월 2건)

2018년 8월 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sup>1)2)</sup> 건수는 총 13건으로 현지산 11건, 수입산 2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산은 발생하지 않았음. 한편, 전체 리콜 발생 1위는 위생으로 8건이 조사되었음. 이 중 2건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었고, 5건은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1건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됨. 2위 발생 사유는 라벨링 및 포장으로 5건 모두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미표기한 것으로 확인됨. 제품별로는 낙농품 5건, 채소류 3건, 기타조제농산품 2건 순으로 집계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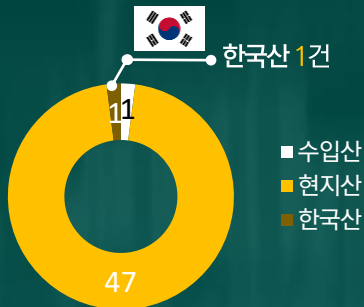
캐나다

한국산 1건 / 총 49건

(‘18.8월 18건)

2018년 8월 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49건으로 현지산 47건, 수입산 2건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한국산 리콜은 1건으로 집계됨. 한국산 제품 리콜 사유는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알레르기 유발항원인 우유를 라벨에 표기하지 않았음. 해당 리콜 제품은 두유였음.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 역시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32건 중 29건에서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항원을 미표기하였고, 2건은 포장 결함으로 조사됨. 2위는 위생 문제로 17건이 집계되었으며 6건에서 살모넬라균, 9건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고, 2건에서 벌레가 발견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15건, 채소류 7건, 연체동물 6건 순임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 사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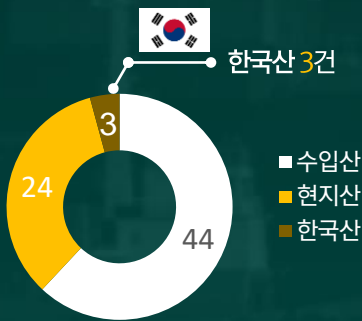
2) 8월 홍콩 리콜 사례는 집계되지 않음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EU**      한국산 3건 / 총 71건  
(18.8월 5건)

2018년 8월 동안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71건으로 수입산 47건, 현지산 24건, 이 중 한국산 리콜은 3건으로 집계되었음. 한국산 리콜 사유는 성분 부적합으로 식품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건조 미역과 조류였음. 한편, 리콜 발생 전체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33건이 집계됨. 제품에서 살모넬라, 장티푸스 등의 식중독균이나 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거나 제품에서 유리, 플라스틱, 금속조각, 벌레가 발견되었음. 2위는 성분 부적합 문제로 25건이 집계되었으며 제품에서 미허가 물질이나 카드뮴, 요오드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됨. 리콜 제품은 채소, 어류, 기타조제농산품이 8건씩 가장 많이 집계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일본**      한국산 0건 / 총 45건  
(18.8월 0건)

2018년 8월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45건으로 모두 현지산인 것으로 조사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기타 문제로 27건 중 13건이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주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제품이었음, 8건은 유통기한 표기가 잘못되었음. 2위는 위생으로 12건 중 8건의 제품이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이었음. 3위는 라벨링 및 포장 문제로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어로 표기하지 않은 라벨링 제품이었음. 제품별로는 주류가 15건, 소스류 8건, 과자류 5건 순임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 필리핀

한국산 0건 / 총 14건

(‘18.8월 8건)

2018년 8월 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4건으로 7건은 수입산, 7건은 현지산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산 중 미국산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은 집계되지 않음. 리콜 사유는 모두 기타 문제로 제품의 등록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제품별로는 과실류 5건, 과자류 2건, 음료, 기타조제농산품, 면류, 갑각류 등이 각각 1건씩 집계됨

####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수입산  
■ 현지산

#### < 리콜 유형별 현황 >

성분 부적합	0
라벨링/포장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4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과실류 / 총 5건
- 과자류 / 총 2건
- 갑각류 / 총 1건



### 싱가포르

한국산 0건 / 총 1건

(‘18.8월 0건)

2018년 8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건으로 말레이시아 산으로 조사되었으며 제품은 기타조제농산품인 것으로 확인됨. 리콜 사유는 위생 문제로 제품에 크로노박터 사카자카균이 발견됨. 크로노박터 사카자카균은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분유에 오염되어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병원성 식중독세균임

####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수입산

#### < 리콜 유형별 현황 >

성분 부적합	0
라벨링/포장	0
위생	1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기타 조제 농산품 / 총 1건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 미국 : 사료 및 채소 등의 식품 내 Fonicamid의 잔류 허용 기준 개정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식품 내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잔류 허용 기준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종류	허용치
배추속 녹색잎 채소(하부그룹 4-16B, 무청 제외)	16 ppm
셀터스	4.0 ppm
목화씨 하부그룹 20C	0.60 ppm
플로렌스 회향	4.0 ppm
콜라비	1.5 ppm
잎 꼭지 채소 하부그룹 22B	4.0 ppm
엽채류 하부그룹 4-16A(시금치 제외)	4.0 ppm

▷ 관련 링크

<https://www.gpo.gov/fdsys/granule/FR-2018-07-23/2018-15449>

## 미국 : 미주리(Missouri), 미국 주 최초 '육식' 단어 규정

미국 미주리주 농무부(Missouri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육류(Meat)” 용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이는 해당 용어 사용을 최초로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가축 혹은 가금류로부터 얻어지지 않은(not from harvested livestock or poultry)” 제품에 “육류(Meat)” 사용을 금지함. 이는 배양육 고기와 실제 가축을 통해 얻어진 고기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포장지에는 “plant-based,” “veggie,” “lab-grown,” “lab-created” 등이 표시되어야 함

▷ 관련 링크

<https://agriculture.mo.gov/animals/meat.php>

<http://revisor.mo.gov/main/OneSection.aspx?section=265.494&bid=35134&hl=265.494%u2044>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 캐나다 : 탄산 칼슘 관련 착색제 목록 수정

캐나다 보건부는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을 착색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착색제 허용 목록을 수정했다고 발표함. 이는 캔디 제조에서 해당 물질 사용에 대한 승인 요청으로 검토되었으며, 캐나다 보건부는 평가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착색제로 해당 물질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힘. 탄산칼슘의 사용은 2018년 9월 6일부로 허용됨

▷ 관련 링크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modification-permitted-colouring-calcium-carbonte-confectionery.html>

#### 캐나다 : 캐나다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발효

캐나다 보건부는 식품 내 트랜스지방의 주요 원천인 “부분적 경화유(PHOs: Partially Hydrogenated Oils)” 사용을 9월 17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함. 이러한 조치는 트랜스 지방 섭취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당 물질의 섭취량을 낮추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해당 규정은 국내 생산 및 수입 식품, 식당에서 준비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므로,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내 PHOs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법으로 간주됨

▷ 관련 링크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news/2018/09/canadian-ban-on-trans-fats-comes-into-force-today.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 중국 : <식물성 식용유 식품안전국가표준> 정식 발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및 시장감독총국은 합동 “식물성 식용유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발표함. 식물성 식용유 명칭 및 라벨 표시 요구 사항, 라벨 표시 성분 배합 비율 및 지방산 함량 표준 등이 추가되어 식용유에 대한 품질 감독이 더 엄격해짐. 본 표준은 2018.12.2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음

- 배합 비율이 ≤5%의 식물성 식용유의 경우 허가 오차: ±10%
- 배합 비율이 >5%의 식물성 식용유의 경우 허가 오차: ±5%
- 지방산 함량이 >2%의 경우 영양성분표를 따로 표시해야 함

▷ 관련 링크

<http://news.foodmate.net/2018/07/474073.html>

### 중국 : 대련, 수입식품 감독 강화

대련의 식품의약품감독부는 수입식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입 식품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주요 감독 사항은 중문 라벨, 제조업체, 유통기한이며, 제품의 경우 영유아 식품, 음료, 주류, 아동식품, 캔디 등임. 검사 및 평가 결과 불합격 식품들은 소각, 리콜, 파기 등의 조치가 취해짐

▷ 관련 링크

<http://news.foodmate.net/2018/09/483098.html>

#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 대만 : <해운 화물통관방법> 부분 조문 수정 공고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해운 화물통관방법”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음

- 제14조: 통관대리상은 통관 관련 서류 신청 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달라도 화물분류 코드가 같은 경우 동일한 신고서로 신청 및 제출
- 제17조: 통관대리상은 수입신고서 수취 후 수입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늦어도 대만 항구 도착 후 1일 안에 완료해야 함
- 제18조: 통관절차 대행 의뢰 시, 제조업체, 수입업체, 화물 소유자는 대행업체에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제19조: 통관대리상이 1:1 매칭 화물 통관 업무 의뢰를 받은 경우, 통관 시 화물 소유자 명의로 처리해야 함
- 제29조: 통관대리상이 제14조 제5항을 위반할 경우, 해관이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징계 처리

▷ 관련 링크

[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3655DD2CDA2ED6C1&sms=9FA66FA17135CFC2&s=D72BB02A225240DD](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3655DD2CDA2ED6C1&sms=9FA66FA17135CFC2&s=D72BB02A225240DD)

## 대만 : 수출입통관신고사항 제1조 및 제3조 수정 발표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수출입통관신고방법” 제1조 및 제 3조를 하기와 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함

- 제1조의 규정 준수 근거 변경: 기존의 관세법은 제17조 8항에 의거하였으나, 본 수정에 따라 제17조 6항에 의거함
- 제3조의 규정 준수 근거 변경: 납세자 혹은 화물 수출인의 통관신고서 변경 관련 의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본 수정에 따라 관세법 제17조 5항-7항에 의거함

▷ 관련 링크

[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3655DD2CDA2ED6C1&sms=9FA66FA17135CFC2&s=5EE1B2A177406592](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3655DD2CDA2ED6C1&sms=9FA66FA17135CFC2&s=5EE1B2A177406592)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 러시아 : 위생감독관리 기관 범위 확대

러시아 농업부는 수의감독관리에 대한 행정위반법(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제23.14 조항 개정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생감독관리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 검역 당국인 수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 외 국방부(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내무부(МВД России), 국가근위대(Росгвардия), 교도소(ФСИН России), FSO(Federal Protective Service, ФСО России), 연방보안국(FSB, ФСБ России) 역시 수의식물위생 감독관리 역할을 수행함

▷ 관련 링크

<http://foodretail.ru/news/minselhoz-vnes-izmeneniya-v-kodeks-ob-389430>